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5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 엄태영 · 조지연 · 이달희

권영진 • 박덕흠 • 유상범

서천호 · 조경태 · 구자근

박형수 · 정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u>2024년 12월</u>	<u>2027년 12월</u>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